

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26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3년 10월 30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15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softdad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

(신금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. 10. .

발 의 자 : 신금자, 이길호, 신경원,
김귀근, 이우천, 이훈미,
이동한, 박상현, 이혜승

1. 제안이유

-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,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운영대상 및 운영계획의 수립, 운영사항 등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협력체계(안 제6조)
- 라. 민간위탁(안 제7조)
- 마. 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(안 제8조)
- 바. 표창(안 제9조)

3. 관련법령

- 「유아교육법」
- 「초·중등교육법」
- 「고등교육법」

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,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시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
가.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
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유아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

다. 군포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

라. 군포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·직원

2. “의회체험활동”이란 군포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의회 견학프로그램, 모의 의회 체험 등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대상) 이 조례 운영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시민으로 한다.

제4조(운영계획의 수립)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의회체험활동 운영의 목표와 방향
2. 모집대상, 신청방법, 운영내용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운영사항 등)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준비 및 운영기간 중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) 의장은 시민들의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위하여 군포시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민간위탁)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「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(체험활동 수기 및 제안)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

수기 또는 의정 및 시정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9조(표창)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 또는 참여자에게 「군포시의회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